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41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윤준병 · 이주희 · 김 윤
서미화 · 김 현 · 박희승
이정문 · 이춘석 · 박홍배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해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 등은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음주운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의 규모와 음주 운항자 또는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낚시어선의 음주운항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5톤 미만의 낚시어선에 대한 음주운항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항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

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가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4의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4의3.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로서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벌칙) <신 설>	<p>제53조(벌칙) ① <u>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2. <u>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u> 3. <u>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u>

<신 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

<신 설>

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가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

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4의3.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로서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현행과 같음)

⑤ -----

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
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
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
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
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
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6.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
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
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
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2. ~ 9.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6의2. ~ 9. (현행과 같음)